2025.04.14.

KiRi 보험법 리뷰

| 보험법 동향 |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손민숙 연구원

요 약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사망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재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며,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보험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 최근 대법원은 모친이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아들과 모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들의 상속인(전남편)과 차순위 상속인(상속인인 모친의 부모)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피고 보험회사는 A(모친)와 2018. 11. 9.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8. 11. 9.~2083. 11. 9., 수익자를 만기 및 생존 수익자 A, 사망 수익자 B(아들), 가입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A와 2005. 9. 16. 혼인신고를 하고, 2006. 10. 18. B를 출산하였으며, 2019. 6. 14. 협의 이혼함
- A는 2020. 1. 16.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20. 6. 1. 이혼하였는데, C는 2020. 6. 7. A와 B를 살해하였으며, B가 먼저 사망한 후 A가 사망함

○ 원고는 자신이 B의 단독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A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함에 따라 상법 제733조 제3항과 제4항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가 판례의 쟁점이 됨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1]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재지정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상법 제733조)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A의 부모들도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1심 법원은 원고가 B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2]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9798 판결

- 피고는 A의 사망 당시 B가 생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3]에 따라 피보험자인 A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1심 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A와 B의 사망 선후를 불문하고 보험수익자 B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음

• 2심 법원은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여기서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는 보험수익자의 차순위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1/2, 참가인인 A의 부모들이 각 1/4의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함[4]

- 2심부터는 A의 부모들이 소에 참가하여 A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임을 주장함에 따라 A와 B의 사망 선후에 관한 판단이 요구됨
- 2심 법원은 상법 제73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수익자 지위는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더 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때(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피보험자 사망)에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고, 그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5]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는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의 경우 C가 A와 B를 함께 살해하였으나, 보험수익자인 B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B의 상속인인 원고와 A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그 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A가 사망함에 따라 A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됨
-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계약자 사망(A의 사망) 당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평등한 비율로 1/2씩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참가인들은 A에 대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각 1/4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함

•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보험수익자가 되

---

3)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4)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판결

5) 판례는 보험수익자 지위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명시하고 있음.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달라짐. 이에 따라 상속인 간의 보험금 분배 비율을 상속비율로 할 것인지 균등비율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고, 상속 포기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도 결정됨.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원시취득한다는 점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통설적 입장임

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6)]

○ **해당 판례는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험금의 귀속을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고히 함**

- 상법 제733조 제3항 및 제4항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범위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차순위 상속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실질적인 권리 귀속이 명확해짐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의 재지정 없이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해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귀속시키는 모순을 방지하고 보험금 귀속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6)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